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1호

**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
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 고시**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-343호(2019.10.17.)로 변경결정된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」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, 아래와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23일
서울특별시 장

1. 고 시 명 :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

2.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

○ 기본계획 변경사항의 유효기간 연장

－ 당초 : 2019.10.27.부터 3년 한시

－ 변경 : 2019.10.27.부터 2025.3.27.까지

(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수립 시까지)

○ 한양도성 도심부 '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' 적용 제외

○ 상업지역 증가 주거용적률 1/2 공공주택 확보원칙 수립

○ 공공주택 면적기준 조정

－ 당초 :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60%이상 전용 40㎡이하 확보

－ 변경 :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)이하로 확보

3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(☎2133-4635)

○ 서울시 홈페이지 > 서울소식 > 공고 > 고시·공고

※ 인터넷 주소 : http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list/1